

4. 보험광고

□ 『보험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개정 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48호

I. 목 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심사함에 있어 보험상품과 관련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은 보험회사(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일반대출상품에 관한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은행등의금융상품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 을 적용한다.
2.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보험회사라 함은 국내에서 인보험 및 손해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외국보험사 또는 이의 지점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와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인을 말한다.
 - 나. 보험상품 이라 함은 장애 위험이나 사고 발생시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품으로서 보장성보험 과 저축성보험 을 말한다.
 - 다. 보장성보험 이라 함은 만기환급금의 합계액이 보험상품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한다.
 - 라. 저축성보험 이라 함은 만기환급금의 합계액이 보험상품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을 말한다.
 - 마. 금리연동형 보험상품 이라 함은 저축성보험중 보험상품의 수익률이 은행의 정기에금금리 또는 보험회사의 약관대출이율과 연동하는 상품을 말한다.
 - 바. 보험료라 함은 보험상품가입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 사. 보험금 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을 말한다.
 - 아. 만기환급금 이라 함은 보험기간 만료시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III. 보험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원칙

보험상품에 대한 표시·광고는 일정한 보험료로 특정보험상품 가입시제공받을 수 있는 각종 보장혜택에 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 특히 보험상품에 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시의 각종 보장혜택과 관련하여 표시·광고상에 나타난 혜택이 일부 제한되는 상품의 경우 이를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표시·광고상에 나타난 혜택이 특별한 제한없이 주어지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따라서 보험상품에 관한 표시·광고는 사실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보장내용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

나 은폐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V. 보험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1. 보험료에 관한 사항

1-1 보험료에 관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보험료산출기준(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납입방법, 보험기간 등)을 모호하게 표기하거나 또는 산출기준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보험료예시

(기준 : 주계약 1,000만 원, 70세만기, 전기월납, 단위 : 원)

구 분	30세	40세	50세	60세
남 자	10,900	20,600	30,500	47,500
여 자	9,100	14,000	18,200	25,000

(×) 보험료 예시

(기준 : 1형, 70세만기, 전기월납, 단위 : 원)

구 분	30세	40세	50세	60세
남 자	10,900	20,600	30,500	47,500
여 자	9,100	14,000	18,200	25,000

1-2 통상 보험상품은 주(기본)계약보장내용과 특약(선택계약)보장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특약포함시에는 보험료가 올라가므로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주계약보험료만으로 특약보장내용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주계약보장내용과 특약보장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함께 표현하는 경우에 특약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를 명시하여야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아니함.
- 주계약가입시의 보험료만 제시한 채 단순히 ?보험금지급예시?등으로 표현하면서 특약시의 보장내용까지 포함하여 표시·광고할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 주계약보장내용과 특약보장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광고하였으나 단순히 주계약 가입시의 보험료를 표기하는 경우(단 주계약기준이라는 사실을 표기하는 경우는 제외) 일반소비자는 주계약보험료만으로 특약혜택 사항까지 보장받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2. 보험혜택에 관한 사항

2-1 사고발생시 보장내용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일정한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암보험 상품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암으로 입원시 입원 4일째부터 하루에 10만 원씩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121일까지만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되며 「단 121일까지에 한함」 등을 밝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 특정암에 대하여 보장혜택을 주는 ○○암보험 상품을 광고하면서 마치 모든 암에 대하여 보장혜택을 주는 것처럼 제한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된다.

- ○○보험상품 가입시의 각종 보장내용에 대하여 광고하였으나 실제로 동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되며, 「보험가입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장혜택이 가능」 등으로 제한사실을 밝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되지 않음.

2-2 보장내용 중 보험사고발생시의 각종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보험금 지급액의 산출기준(보험가입금액 등)을 밝히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기함으로써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보장내용〉 (기준 : 주계약 3,000만 원, ○○특약 1,000만 원)

· 치료자금 · 진단확정시(1회한) 2,500만 원

· 수술자금

· 수술시(1회당) 850만 원 (○)

- 〈보장내용〉 (기준 : 1계좌, 특약부가)

· 치료자금

· 진단확정시(1회한) 2,500만 원

· 수술자금

· 수술시(1회당) 850만 원 (×)

2-3 보험기간 중의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혜택과 만기환급금지급, 무사고축하금 등의 혜택에 관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일정한 보험사고 발생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자동 해약되어 만기환급금 등의 지급혜택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이러한 제한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위 두 종류의 보험혜택이 언제나 동시에 제공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해약환급금 예시(기준 : 보험가입금액 5구좌, 10년만기)

(단위 : 원)

경과기간	1년	3년	5년	10년
납입보험료	237,600	712,800	1,188,000	2,376,000
해약환급금	88,600	496,900	978,100	2,376,000

3-3 해약환급금 지급액에 대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해약환급금액에 가입자가 보험상품 해약전에 이미 지급받은 각종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표기하지 않으므로써 실제보다 해약환급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해약환급금 예시(기준 : 주계약가입금액 : 3,000만 원/가입연령 30세(남)/ 전기납, 월납/보험만료기간 : 55세)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년	493,200	-
3년	1,479,600	273,300
5년	2,466,000	1,404,300
7년	3,452,400	2,511,000
10년	4,932,000	3,969,900

※ 위 해약환급금은 보험기간 중 가입자가 이미 지급받은 ○○축하금이 포함된 금액임.

(×) 해약환급금 예시(기준 : 주계약가입금액 : 3,000만 원/가입연령 30세(남)/ 전기납, 월납/보험만료기간 : 55세)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년	493,200	-
3년	1,479,600	273,300
5년	2,466,000	1,404,300
7년	3,452,400	2,511,000
10년	4,932,000	3,969,900

4. 만기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4-1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만기환급금 지급액에 대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동 만기환급금이 정기에금 금리변동시에는 증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표시·광고상에 나타난 만기환급금을 보험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만기환급금(원)	3년	5년	10년
개 인 형	2,590,000	3,408,020	3,380,800

※ 위 만기환급금은 정기에금 금리 변동시는 변동될 수 있음.

(×)

만기환급금(원)	3년	5년	10년
개 인 형	2,590,000	3,408,020	3,380,800

4-2 만기환급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보험상품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체에 대해 만기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처럼(단 납입보험료 전체에 대하여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상품은 제외)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보장성보험상품의 경우>

- 보험만기시 기납입보험료를 만기환급금으로 지급
(단, 만기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특약보험료를 제외한주계약보험료분임) (○)
- 보험만기시 기납입주보험료를 만기환급금으로 지급 (○)
- 보험만기시 기납입보험료를 만기환급금으로 지급 (×)

<저축성보험상품의 경우>

-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일정이율로 적립하여 만기환급금 지급
(단 만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중 적립분 순보험료를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일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임) (○)
- 납입보험료중 적립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일정이율로 적립하여 만기환급금 지급 (○)
-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일정이율로 적립하여 만기환급금 지급 (×)

